



괴 산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알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의무교육(비대면 온라인 교육, 관련 협회 대면교육도 인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관내 신규 허가·지정받은 마약류 도매업자·마약류 소매업자·마약류 관리자 및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2. 이수기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기한 엄수)**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법 제50조 및 관련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미이수 시 **경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안내문

- 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www.nims.or.kr>) 속 및 회원가입, 로그인
- ②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 동영상(의무교육)
- ③ 아래의 강의 교육신청 후 [나의 동영상 강의] 에서 강의 신청

필수	구분	강의명
	공통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공통교육)
선택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 도·소매업자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대상)	

*** 공통교육, 선택교육(택1) 총 2강(2시간 이상)을 필히 이수해야 함.**

4. 이수완료 후, 이수증(확인증)을 팩스(☎043-832-89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괴 산 군 수



수신자 관내 신규 마약류취급자 귀하, 아이콧요양병원 마약류취급자 귀하

주무관 **채송아** 의약보건팀장 **산선이**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전결 2024. 3. 21.

협조자

시행 보건정책과-7439 (2024. 3. 21.) 접수

우 28033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을 동진천길 43 / <http://www.goesan.go.kr/>

전화번호 043-830-2336 팩스번호 043-832-8927 / songa2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그리운 나의 고향 괴산! 사이버 괴산군민이 되어보세요! <https://www.goesan.go.kr/cyber/index.do>"